

## 사용설명서

(전자신고서비스 이지세무)

### “클릭 한 번으로 신고 끝!”

아이퀘스트는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와 연동,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인사말

## ■ 인사말

**아이퀘스트는 1996년 설립 이래,  
중소기업을 위한 IT솔루션 얼마에요를 출시, 보급에 매진하였으며,  
고객만족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994년 <아이피>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첫 번째 경리 프로그램인 <나도 회계사> 출시 이후, 1996년 (주)아이퀘스트로 상호를 변경하여 회계/경리프로그램의 베스트셀러인 얼마에요를 출시, 현재 국내 15만 기업이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이퀘스트(IQuest)는 '정보(Information)'와 '구합니다(Quest)'를 합성한 말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구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나(I)는 탐구합니다 (Quest)'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리, 회계, 판매, 재고, 인사, 급여, 무역 분야에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이퀘스트의 바람이자 목표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정신을 프로그램에 담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아이퀘스트는 언제나 고객을 위한 차별화 된 서비스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고객의 요구에 만족을 드리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경영, 관리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 부가세신고

## ■ 부가가치세 요약 정보

### • 부가가치세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 기 1.1~6.30	예정	1.1~3.31	4.1~4.25	법인
	확정	1.1~6.30	7.1~7.25	법인&개인
제 2 기 7.1~12.31	예정	7.1~9.30	10.1~10.25	법인
	확정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1기확정 및 2기확정만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일반) 중 사업부진자, 조기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매출세액 - 매입 세액 (매출액 10% - 매입액 10%)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4,800,만원 미만	(매출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 공제 세액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15%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로 수집 및 판매업	20%
농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음식업 숙박업	30%
운수 및 통신업	40%

얼마예요 3E 프로그램 에서는 사업자에 따른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부가세 전자신고 시 필요한 국세청 신고자료 생성까지도 가능합니다. 저장한 부가세 신고자료는 국세청 부가세 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TIP

부가가치세신고서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기간별 본인의 사업실적 즉 매출과 매입 거래분을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때 필요한 서식으로서, 다음의 기입요령에 의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금액은 원단위 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지세무 부가세 신고서 메뉴구조**

1. 부가세 신고서 작성: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나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첨부서류 작성: 홈택스의 부가세 전자신고에서 지원하는 첨부서류를 지원하며, 서식명을 클릭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3. 신고자료 저장 및 생성: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는 전산매체를 생성합니다. **(전자신고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4. 부가세 신고서 저장 이력: 이전 신고했던 신고서 이력을 볼 수 있고, 신고서를 선택하여 수정작성도 가능합니다.



■ **부가세 신고서 작성**

• **신고사업자 및 신고구분 작성하기**

작성 >
인쇄 >

2012년 ▼
2기 ▼
확정 ▼
 3개월
 6개월

신고 사업자정보	상호	(주)아이퀘스트서비스	대표자명	아이퀘스트	사업자번호	211-86-72092
	개업일		납세구분	법인사업자	부가세구분	일반과세자
	사업주소		관할세무서		국세청	

▶ **신고기간 작성 요령**

신고 년도 및 기수, 신고유형 (확정,예정), 단위(3개월,6개월) 을 선택합니다.

신고유형	신고대상
예 정	- 법인사업자 전체
	- 개인 일반과세자 중 선택하여 예정신고를 납부할 수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접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 미달인 경우.</li> <li>•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li> </ul>
확 정	- 모든 사업자(법인, 개인 포함)
기한 후 과세표준	-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한 자
영세율등 조기환급	- 수출, 시설투자 등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자

※ 기한 후 과세표준 또는 영세율 조기환급의 신고서 선택은 인쇄 미리보기에서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시: 저장이력에서 원하는 신고서의 상세보기를 클릭하여 [부가세 신고서 수정] 버튼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시 [수정모드]로 변환되고, 작성 버튼은 수정버튼으로 변경되며, 내용 수정 후 [수정] 버튼으로 신고서를 수정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신고사업자정보 작성 요령

사업자 신고 정보를 입력합니다. 모든 칸은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상 직접 작성은 불가하며 신고사업자정보 수정창 내에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신고사업자정보 수정
✕

납세자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법인사업자 <input type="radio"/>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과세자 <input type="radio"/> 간이과세자	원천세신고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매월신고 <input type="radio"/> 반기신고
신고사업자번호	211-86-72092 ※ 회원님의 사업자 번호입니다.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상호(법인)명	<input type="text" value="(주)아이퀘스트"/>	대표자명	<input type="text" value="김순희"/>
사업장주소	<input type="text"/>		
전화번호	<input type="text" value="0220254630"/>		
개업일	<input type="text"/>	폐업일	<input type="text"/>
업종코드	<input type="text"/>	업태	<input type="text"/>
종목	<input type="text"/>		
주류도소매	<input checked="" type="radio"/> 안함 <input type="radio"/> 주류도매 <input type="radio"/> 주류소매		
홈택스ID	<input type="text"/>	관할세무서	<input type="text" value="국세청"/>
환급은행	<input type="text"/>	계좌번호	<input type="text"/>

- **납세자구분:** 사업자 번호에 따른 납세자 구분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부가세 신고구분:**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구분을 선택합니다. (일반, 간이)
- **원천세 신고구분:** 천세 신고구분을 선택합니다. (매월신고, 반기신고)
- **신고사업자번호:** IQEST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사업자번호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변경 불가)
- **상호(법인)명:** IQEST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상호명을 자동으로 불러 오며, 사용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명:** IQEST 홈페이지 가입 시 등록한 대표자명을 자동으로 불러 오며, 사용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주소:** 회사 주소를 입력합니다. 2012년 신고부터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주소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을 검색하여 주소 선택)

**도로명·우편번호 검색** ✕

※ 도로명 검색어를 정확히 입력할수록 검색이 빠릅니다.

시/도	서울특별시	시/군/구	구로구	도로명검색	구로동	🔍
-----	-------	-------	-----	-------	-----	---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법정동코드	선택
1528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동로 2	1153010300	<input type="radio"/>
1528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동로 3	1153010300	<input type="radio"/>
1528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동로 5	1153010300	<input type="radio"/>
1528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동로 5	1153010300	<input type="radio"/>
1528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동로 5	1153010300	<input type="radio"/>

- **전화번호:** 회사의 대표번호를 입력합니다.
- **개업일:** 회사의 사업 개시일을 입력합니다.
- **폐업일:** 회사의 사업 폐업일을 입력합니다. (폐업신고 시에만 입력 바랍니다)
- **업종코드:** 회사의 업종코드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 **업태:** 회사의 업태를 입력합니다.
- **종목:** 회사의 종목을 입력합니다.
- **주류도.소매:** 주류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의 경우 입력합니다.
- **홈텍스ID:** 전자신고 시 필요한 홈텍스 ID를 입력합니다.
- **관할세무서:** 관할세무서를 선택합니다. (기본값은 '국세청'으로 자동 지정)
- **환급은행:** 부가세 전자신고를 하여 환급금이 있을 때 환급 받을 은행을 선택합니다.
- **계좌번호:** 환급은행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수정한 신고사업자정보는 [적용] 버튼으로 입력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내용을 수정하고 싶지 않다면 [취소]버튼으로 신고사업자정보 수정창을 종료합니다. 입력(수정)한 정보는 부가세신고서의 신고사업자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 [작성 >](#) [인쇄 >](#)

①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2012년 ▾ 2기 ▾ 확정 ▾  3개월  6개월

신고 사업자정보	상호	<input type="text" value="(주)아이퀵서비스"/>	대표자명	<input type="text" value="아이퀵트"/>	사업자번호	<input type="text" value="211-86-72092"/>
	개업일	<input type="text" value="20010101"/>	납세구분	<input type="text" value="법인사업자"/>	부가세구분	<input type="text" value="일반과세자"/>
	사업주소	<input type="text" value="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구로동로 2"/>			관할세무서	<input type="text" value="국세청"/>

구분		금액	세율	세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8,750,000	10/100	875,000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2)		10/1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2,000,000	10/100	200,0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10/100	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100	
		기타 (6)		0/100	
	예정신고누락분 (7)		0		0
	대손세액가감 (8)				
	합계 (9)		<b>10,750,000</b>	㉔	<b>1,075,000</b>
	매입 세액	세금 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10)	3,500,000	
고정자산매입 (11)			0		0
예정신고누락분 (12)		0		0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13)					
기타공제매입세액 (14)		0		0	
합계 (10) + (11) + (12) + (13) + (14) (15)		<b>3,500,000</b>		<b>350,000</b>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16)		0		0	
차감계(15) - (16) (17)		<b>3,500,000</b>	㉕	<b>350,000</b>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㉔ - 매입세액㉕)				<b>725,000</b>	
경감 공제 세액	기타 경감·공제세액 (18)			0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19)				
	합계 (20)			㉖	
예정신고 미 환급 세액 (21)			㉗	200,000	
예정고지세액 (22)			㉘	1,000,000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			㉙		
가산세액계 (24)			㉚		
차가감납부할세액 (환급받을세액) (㉔-㉕-㉖-㉗+㉘+㉙)				<b>-475,000</b>	

과세표준명세				면세사업명세			
업태	종목	업종코드	금액	업태	종목	업종코드	금액
			10,750,000				

신고사업자정보 입력란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공통사항으로 앞서 설명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표준이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객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의 10%가 매출세액이나 수출하는 재화 등 일부 영(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 기타 (정규영수증외 매출분) 4가지로 각 항목에 따른 금액 및 세액을 입력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TIP 이용안내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영세율공급가액
<b>전체합계</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공급가액합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발급분	사업자번호 발급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0
	주민번호발급분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0
	<b>소 계</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공급가액합산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번호 발급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주민번호 발급분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input type="text" value="0"/>	0
	<b>소 계</b>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공급가액합산

라인추가   라인삭제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삭제
1	<input type="text"/>	✕					

적용 >   취소 >   인쇄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작성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대상**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발급받은 매출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매출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에 따라 발급받은 매출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 작성요령**

1.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인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발급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2.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 「종이세금계산서」분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였으나 과세기간(예정신고 대 상자인 경우 예정신고기간)종료일 다음달 16일 이후 국세청에 지연 전송한 명세 등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버튼으로 맨 아래 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 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TIP 이용안내
✕

구분		공급가액	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매입세액	③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작성대상

구분	매입처수	매수	금액	세액
합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라인추가
라인삭제

일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삭제
1	<input type="text"/>	✕				
2	<input type="text"/>	✕				

적용 >
취소 >
인쇄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받은 매입자가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공급가) 및 세액을 기재합니다.

### - 작성요령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하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2가지의 항목에 따라 입력한 금액 및 세액은 신고서의 해당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매입세액>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라인추가 버튼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라인삭제 버튼을 맨 아래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이음인내

구분	공급가액	세액	합계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공제첨부서식 입력 공제대상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 금액집계표의 합계금액  원과 ①의 합계금액이 동일해야 합니다.

구분	신용카드·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합계	앞의 합계중 세금계산서 (계산서)교부금액
과세매출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면세매출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봉사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합계금액 : 
공제세액 :

적용 >
취소 >
인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매출분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 및 전자화폐수취분에 대한 매출을 의미하며 해당 금액 및 세액을 입력합니다.

세액은 금액 입력 시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금액의 10%)

- 공제세액: [합계금액 x 1.3%]로 공제세액이 계산됩니다.(공제한도: 연간 700만원)

4.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기타 매출금액 입력
이동안내
✕

구분	공급가액	세액	합계
과세분 ①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0	0	0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보증금이자 합계 0원은 ①의 합계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입력 ▼ 작성대상

임차인정보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성명(상호) <input type="text"/>
건물정보	동 <input type="text"/> 층 <input type="text"/> 호 <input type="text"/> m2(면적)	
임대정보	※ 과세기간 중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입주일(과세기간시작일), 퇴거일(갱신일 전일), 갱신일(계약변경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입주일 <input type="text"/>
	월임대료	퇴거일 <input type="text"/>
	보증금이자	갱신일 <input type="text"/>
	월임대료합계	<input type="button" value="입력내용추가"/> <input type="button" value="내용 초기화"/> <input type="button" value="삭제"/>

일련번호	사업자(주민)번호	상호(성명)	입주일	갱신일	퇴거일	보증금	월임대료
등	출	호	면적	보증금이자	월임대료합계	임대료 수입금액계	비고
<b>임대료 수입금액 합계</b>							0 원

※ 현금매출명세서 입력 ▼ 작성대상

건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심판변론인  
  법무사  
  경영,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측량사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  
 의료사업  
 수의사업  
 그외

구분	합계	현금매출	법정영수증매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급가액	건수	null	null	null	null
	금액	null	null	null	null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삭제
1	<input type="text"/>	✕					
2	<input type="text"/>	✕					
3	<input type="text"/>	✕					

적용 >
취소 >
인쇄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간주임대료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등 이외의 매출분 등을 의미하며 해당 항목에 따른 금액 및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작성대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이 있는 아래의 경우 작성합니다.

-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보증금이 있는 경우
- 기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이 있는 경우

**- 작성요령**

과세분인 기타 매출금액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입력합니다.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입력**

-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 임대료)을 기재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감주임대료**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X 계약기간 1년의 정기에금이자율(연 4.0%)**

**365(윤년의 경우 366)**

- **전대의 경우 전대면적에 상당하는 임차금을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2002.1.1 이후)**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를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2009.2.4 이후 공급 또는 공급받는 분부터)

- **임차인정보:** 부동산 임차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사업자번호, 상호)
- **건물정보:** 임대 건물의 정보(동, 층, 호, 면적)를 입력합니다.
- **임대정보:** 건물의 임대정보를 입력합니다.
  - 보증금: 임대 건물의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 입주일: 입주일을 입력합니다. 키보드 입력 혹은 달력아이콘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 임대 건물의 월 임대료 금액을 입력합니다.
- 퇴거일: 퇴거일을 입력합니다. 키보드 입력 혹은 달력아이콘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이자: 보증금에 대한 보증금이자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입주/퇴거일 입력 시 기간에 따른 보증금이자가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 갱신일: 임대 건물의 갱신일자를 입력합니다. 키보드 입력 혹은 달력아이콘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입주일(과세기간시작일), 퇴거일(갱신일 전일), 갱신일(계약변경일)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월 임대료합계: 입력한 입주/퇴거일 기간내의 월 임대료 합계를 계산하여 자동으로 나타냅니다.

### 【버튼 설명】

**입력내용추가** : 입력한 임대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내용 초기화** : 입력된 임대정보 내용을 초기화하여 새로운 임대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삭제** : 저장된 임대정보를 선택하여 해당 버튼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 현금매출명세서 입력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예식사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작성합니다.  
또한 2010년 7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인노무사도 추가되었습니다.

- 현금매출명세를 입력 할 사업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 법정영수증매출: 각 법정영수증에 따른 건수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거래처와의 현금 매출이 있을 경우 거래처정보 및 거래일자, 금액, 세액을 입력합니다. (세액 및 공급대가는 입력한 금액[공급가]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 나타나며,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버튼으로 맨 아래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타 2가지로 각 항목에 따른 금액을 입력합니다.

◆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그 결과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완전히 제거되는 완전 면세제도로 현재 수출하는 재화 및 정책적인 목적에서 조특법에서 규정한 일부거래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분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영세율공급가액
<b>전체합계</b>					공급가액합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발급분	사업자번호 발급분				0
	주민번호발급분	0	0	0	0
	소 계				공급가액합산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번호 발급분				
	주민번호 발급분	0	0	0	0
	소 계				공급가액합산

라인추가   라인삭제

일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삭제
1							✕

적용 >
취소 >
인쇄 >

- 작성요령

신고대상기간 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의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버튼으로 맨 아래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 2. 기타

기타 영세율금액 입력
TIP 이윤안내
✕

구분	공급가액
영세율	<input type="radio"/> 영세율 기타 매출부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연계 첨부서류 작성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월별판매액합계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구분	건수	외화금액	원화금액
합계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수출제화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기타영세율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라인추가 라인삭제

일련	수출신고번호	선(기)적일	코드	환율	외화금액	원화금액	세액	삭제
1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ADP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2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ADP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적용 >
취소 >
인쇄 >

### - 작성요령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과는 반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분을 입력합니다.

첨부서류를 작성하면 영세율 기타매출부의 공급가액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나며, 직접 입력(수정)도 가능합니다. 작성한 첨부서류는 부가세신고 시 첨부되는 서류로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신고필증으로 물품 수출 후 수출면장을 받아 명세서를 기재하고, 수출면장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여러 형태의 거래일 경우 기타 영세율 항목에 거래 건수 및 외화금액, 원화금액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코드: 수출대금을 결제 받기로 한 외국통화의 코드를 선택합니다.
- 환율: 수출재화의 선(기)적 일자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합니다.
- 외화금액: 수출물품의 인도조건에 따라 지급방기로 한 전체 수출금액으로 수출신고서의 금액을 소수점미만 2자리까지 기재합니다.
- 원화금액: [환율x외화금액] 으로 원화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원화로 환가한 경우 금액을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기재합니다.
- 세액: 원화금액의 10%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 특별소비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 소포수령증 등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수출통화코드: 수출대금을 결제 받기로 한 외국통화를 선택합니다.
- 당기제출금액(외화): 원화로 대금을 결제 받기로 한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당기신고해당분(외화): 원화로 대금을 결제 받기로 한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당기제출금액(원화): 원화로 대금을 결제 받을 경우 금액을 입력합니다.
- 당기신고해당분(원화): 원화로 대금을 결제 받을 경우 금액을 입력합니다.



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버튼으로 맨 아래 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 월별판매액합계표: 농어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판매하였을 경우 또는 장애인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판매 할 경우 작성합니다.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 내국신용장이란?

수출신용장을 가진 수출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조달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신용장 입니다.

◆ 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 입니다.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중 작성하고자 하는 서류의 구분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후에는 총 건수 및 금액 합계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버튼으로 맨 아래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

▶ 예정신고 누락분-매출 TIP 이용안내 ✕

구분			공급가액	세액
매출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0	0
		기타 매출분	0	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0	
		기타 매출분	0	
합계			0	0

적용 >
취소 >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출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확정신고 시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예정신고누락분 매출금액을 과세분(세금계산서교부분, 기타분), 영세율분(세금계산서교부분, 기타분)으로 구분 입력합니다.

1. 예정신고 때 신고하지 못한 매출금액이 세금계산서 교부분인 경우 반드시 "매출처별세금합계표"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예정신고 누락분은 일정액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가산세"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손세액가감

- 대손세액공제신고서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후,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인해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받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 대손세액변제신고서란?  
 대손세액변제신고서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나 회사의 파산등으로 인해 매입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가 추후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 하였을 경우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다시 공제 받기 위해 작성합니다.

구분	공급자	공급받는자
대손 확정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차감
대손 변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

1. 공급자

-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신청서 중 대손발생 -> 신고서 상 대손세액가감에서 차감
-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 신고서 상 대손세액가감에서 가산

2. 공급받은 자

- 대손이 확정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내역 중 대손처분받은세액 -> 신고서 상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중 대손처분받은세액
- 대손금을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신청서 중 대손변제 -> 신고서상 기타 공제매입세액 중 변제대손세액

▶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거나 수입한 재화 또는 제공 받은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고정자산매입 2가지로 각 항목에 따른 금액 및 세액을 입력합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이용안내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b>전체합계</b>	<b>165</b>	<b>581</b>	<b>4,331,905,346</b>	<b>433,140,269</b>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수취분	사업자번호 수취분	0	0	0
	주민번호수취분	0	0	0
	<b>소 계</b>	<b>0</b>	<b>0</b>	<b>0</b>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수취분	사업자번호 수취분	165	4,331,402,996	433,140,269
	주민번호 수취분	0	0	0
	<b>소 계</b>	<b>165</b>	<b>4,331,402,996</b>	<b>433,140,269</b>

일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삭제
1	1011111107	휴메드네트웍스	2	1,140,000	114,000		✕
2	1018138434	장우양행(주)	12	12,550,000	1,255,000		✕
3	1018634660	콜로플라스트코리아(주)	2	3,739,181	373,919		✕
4	1028142925	조신회사 케이지	6	739,466	73,944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작성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처별로 작성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대상**

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예정신고 시 신고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 작성요령**

1.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과세기간(예정신고대상자인 경우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분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2.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 「종이세금계산서」분과 「전자세금계산서」로 전송 받았거나 과세기간(예정신고 대 상자인 경우 예정신고기간)종료일 다음달 16일 이후 국세청에 지연 전송한 명세 등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버튼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  
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버튼으로 맨 아래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2. 고정자산매입

**기타공제매입세액명세** 이용안내

구분	금액	세액	연결첨부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일반매입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
	고정자산매입	0	고정자산 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신고서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과세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
변제대손세액			
합 계	0	0	

**고정자산 취득명세서** 작성대상

감가상각자산종류	건수	공급가액	세액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감가상각자산			
합계			

※ 하단의 ①금액은 전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합계 15,000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 하단의 ②금액은 전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제출합계 0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구분	건수	공급가액	세액
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제출분			
합계			

※ 상단표의 합계와 하단표의 합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적용 >
취소 >
안내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작성합니다.

**- 입력방법**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을 자산종류별로 구분 입력하고 총합계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제출분으로 구분 입력합니다.

신고대상기간 중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상의 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 입력한 내용은 반드시 일반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의 [매입세액] 입력화면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예정신고 누락분

▶ 예정신고 누락분-매입 TIP 이용안내 ✕

구분		공급가액	세액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분	0	0
	기타공제 매입세액	0	0
합계		0	0

적용 >
취소 >

예정신고 시 누락한 입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으로 확정신고 시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기타공제 매입세액으로 구분 입력합니다.

예정신고 시 신고하지 못한 매입금액은 그 내용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의제매입세액" 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급시기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 받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지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TIP 이음인내

구분		공급가액	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②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매입세액	③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 작성대상

구분	매입처수	매수	금액	세액
합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리인추가 리인삭제

일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삭제
1	<input type="text"/>	✕				
2	<input type="text"/>	✕				

적용 >
취소 >
인쇄 >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받은 매입자가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공급가) 및 세액을 기재합니다.

- 작성요령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하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 2가지의 항목에 따라 입력한 금액 및 세액은 신고서의 해당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매입세액>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리인추가 버튼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계속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력한 사업자번호 발급분을 삭제할 수도 있는데 해당 발급분에 있는 삭제[X]를 이용하여 삭제하거나 리인삭제 버튼을 맨 아래있는 발급분부터 차례로 삭제도 가능합니다.

✓ 기타공제매입세액

기타공제매입세액 명세 TOP 이용안내
✕

구분	금액	세액	연결첨부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일반매입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고정자산매입	0	고정자산 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신고서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과세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
변제대손세액			
합계	0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 적용대상

구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기타 신용카드			
합계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에 작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분 금액

※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고서에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분 금액

리연추가
리안삭제

일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카드회원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삭제
1						✕
2						✕
3						✕

적용 >
취소 >
인쇄 >

기타공제매입세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중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의제매입세액신고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고금의제매입세액신고서,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작성요령

항목별로 구분된 명세를 입력합니다. 명세 작성은 연결첨부서식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의 신고서가 하단에 나타나며 작성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금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 예정신고 시 누락한 신용카드 매입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의제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 의제매입공제 관련 증빙자료가 신용카드 매입전표인 경우, “기타공제매입세액” 입력 화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야하며, 매입계산서인 경우는 “기타첨부서류 입력” 화면에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고금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고금의제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작성합니다.
- 재고매입세액: 전기에 간이과 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 변제대손세액: 거래 상대방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매입금액을 변제한 경우 작성합니다.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작성 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서 신용카드 수취분을 입력하면 일반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으로 구분하여 보여줍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이동안내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공통매입세액 관련

**2.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구분	매수	공급가액	세액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②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④ 접대비 및 미와 유사한 비용 관련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⑤ 면세사업 관련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⑧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합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적용 >
취소 >
인쇄 >

명세서의 세부내역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공통매입세액 관련(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나 공통매입세액 관련한 명세를 작성하고자 할 때 해당 항목에 따른 명세를 작성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관련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과/면세 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총공급가액 등"란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 · 총매입가액 · 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입합니다. "면세공급가액 등"란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 매입가액 ·

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입합니다.

- ※ “공급가액 등”란이 금액이면 “면세공급가액 등”란은 금액이어야 하며, “총공급가액 등”란이 면적이면 “면세공급가액 등”란도 면적이어야 합니다.
- ※ 금액과 면적을 동시에 적으면 안됩니다.

## 2.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안분 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자 할 때 작성합니다. “면세사업확정비율”란은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을 기재합니다.

- ※ “면세사업확정비율”란은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경감률”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0분의 5(2001.12.31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10을 선택)를 선택하고, 그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를 선택합니다.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비율”란은 현재의 면세비율과 재계산 이전의 면세비율을 입력하면 자동계산 됩니다.

- ※ “경감률”은 1미만이어야 합니다.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시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취득일 이후 재계산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 ※ 확정신고기간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경감공제세액

1. 기타 경감·공제세액

기타 경감 · 공제 세액 TTF 이용안내
✕

구분	금액	세율	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0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			0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0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0
기타			0
합계			10,000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작성

가. 공제대상 세액 공제대상

②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수	③ 건당 공제금액	④ 공제 공제가능세액 (②×③)	① 해당 공제세액 (④과⑤중 적은 금액)
0건	200원	0원	0원

나. 공제 한도액 계산

⑥ 연간 공제한도액	⑦ 기 공제세액	④ 해당 과세기간 공제한도액 (⑥과⑦)
100만원	0원	0원

적용 >
취소 >
인쇄 >

경감공제세액은 일반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로 2가지 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경우 매기 확정 신고 시마다 10,000원씩 전자신고에 대해 공제해주고,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세액공제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했을 경우 건당 200원씩 공제합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의 세액을 입력합니다.

- 작성요령

-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 할 경우 신고 건당 1만원을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을 기재 (2010.1.1~2013.12.31.까지 한시 적용)
-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기재하며, 총 합계 세액의 9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교통난으로 택시운영이 어렵고, 택시기사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2013.12.31.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공제세액(발급 건당 1만원씩, 연간 3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을 기재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사업자(가맹점)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각 업소에 설치하여 주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기타: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 등으로 성실신고사업자경감세액 · POS 도입 사업자등경감세액 · (2007년 2기까지 적용)일반과세전환자경감세액 등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교부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성한 경우 공제세액 (2011.1.1 이후 발급 건당 100 원씩 연간 100 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는 2012년 1기 예정 신고부터 추가되었습니다.

※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소매업, 음식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도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이음인내

구분	공급가액	세액	합계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공제첨부서식 입력 공제대상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 금액집계표의 합계금액  원과 ①의 합계금액이 동일해야 합니다.

구분	신용카드·직불·기영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합계	앞의 합계중 세금계산서(계산서)교부금액
과세매출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면세매출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봉사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합계금액 :     공제세액 :

적용 >
취소 >
인쇄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 그 발행(결제)금액의 1,000분의13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을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작성요령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함)을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출이 발생한 사업자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수출·시설투자 등에 의한 조기환급대상자 외의 일반환급대상자는 예정신고시에 환급하지 아니하며, 확정신고시 납부(환급)할 세액에서 공제(가산)합니다.

- **작성요령**

세액 입력은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며,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기재합니다.

▶ **예정고지세액**

개인사업자(법인제외)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 결정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세액 입력은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기재합니다.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의 투명화·정상화를 통한 귀금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세를 무납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제도를 「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하여, 매입자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 작성요령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신한은행)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 매입자가 납부한 매출세액의 범위 안에서 공제됩니다.

▶ 가산세 명세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47)

▶ 가산세 명세 TIP 이용안내
✕

사업자미등록 등	<input type="text"/>	1/100	<input type="text"/>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input type="text"/>	1/100 <input type="text"/>
	지연수취	<input type="text"/>	1/100 <input type="text"/>
	미발급 등	<input type="text"/>	2/100 <input type="text"/>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전송	지연전송	<input type="text"/>	1/1000 <input type="text"/>
	미전송	<input type="text"/>	3/1000 <input type="text"/>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신고 불성실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납부 불성실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input type="text"/>	5/1000	<input type="text"/>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input type="text"/>	1/100	<input type="text"/>
합 계			<input type="text"/>

적용 >
취소 >

**- 작성요령**

신고내용 중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사업자 미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거나 타인명의(배우자 제외)로 허위 등록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영54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영54①)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 공급받는 자 외의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시기 다음달 15일 후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달 15일 후에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 신고 불성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납부 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환급 받은 세액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등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모든 가산세 항목의 금액과 세액은 납세자가 예정신고여부를 감안하여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및 면세사업명세

▶ 과세표준/면세사업명세 TIP 이월연내
✕

	업종코드	업태	종목	수입금액
과세표준명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025,00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수입금액제외			<input type="text"/>
	과세표준 합계금액			3,025,000

	업종코드	업태	종목	수입금액
면세사업명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수입금액제외			<input type="text"/>
	면세사업 합계금액			<input type="text"/>
	<span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작성대상</span> 계산서 발급금액			<input type="text"/>
	<span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작성대상</span> 계산서 수취금액			<input type="text"/>

적용 >
취소 >

✓ 과세표준명세

업종별로 매출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이 있으면 모두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과세표준 금액을 업태/종목별로 기재하되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합계금액은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액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금액을 합산하여 1개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명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검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농·축·수·임산물이나 의료·교육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검업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산서 발급금액: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을 경영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작성합니다. 금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계산서 수취금액: 사업자가 신고대상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을 구입하고 교부 받은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금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 작성 > 인쇄 >

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2012년 ▾ 2기 ▾ 확정 ▾  3개월  6개월

신고 사업자정보	상호	고객센터	대표자명	관리자	사업자번호	999-11-05007
	개업일		납세구분	개인사업자	부가세구분	간이과세자
	사업주소				관할세무서	국세청

**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서 - [2012년 1기 예정]**

구분		금액	부가율	세율	세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소매업	(1)		15/100	10/100
	제조업,전기·가스 및 수도산업	(2)		20/100	10/100
	건설업,부동산임대업,홍·수·임· 머업,기타 서비스업,음식점업, 숙박업	(3)		30/100	10/100
	운수·창고 및 통신업	(4)		40/100	10/100
	영세율적용분	(5)			0/100
	재고납부세액	(6)			
	합계	(7)			㉔
공제 세액	매입 세액 공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				
	합계	(8)			
	의제매입세액공제	(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전자신고 세액공제	(1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기타	(13)			
	합계	(14)			㉕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㉖
가산세액	(16)			㉗	
차감납부할세액 (환급받을세액) (㉔-㉕-㉖+㉗)					(17)

과세표준명세				면세사업명세			
업태	종목	업종코드	금액	업태	종목	업종코드	금액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표준이란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객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매출세액은 과세표준의 10%가 매출세액이나 수출하는 재화 등 일부 영(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과세분**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작성요령**

해당 업종 구분에 따른 금액을 입력합니다. 부가율에 따라 입력한 금액의 세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구분 (년)	제조,소매,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농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02	20%	25%	30%
2003	20%	27.5%	35%
2004-2005	20%	30%	40%
2006~2014	20%(소매업 15%)	30%	40% (음식점/숙박업 3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영세율 적용분

▶ 기타 영세율금액 입력 TIP 이용안내
✕

구분	공급가액
영세율	<input checked="" type="radio"/> 영세율 기타 매출부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연계 첨부서류 작성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월별판매액합계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구분	건수	외화금액	원화금액
합계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수출재화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기타영세율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라인추가
라인삭제

일련	수출신고번호	선(기)적일	코드	환율	외화금액	원화금액	세액	삭제
1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ADP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2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ADP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적용 >
취소 >
인쇄 >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법 제11조 및 조특법 제105조 등의 규정에 해당되어 영 (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작성요령**

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 당해 수출금액 등을 기재 합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반출(수출)하거나 무역업자와 대행계약에 의거 대행 수출하는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첨부서류 입니다.
-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 개별소비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 수출 신고필증,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우편수출의 경우에 한함)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당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첨부서류 입니다.

- 월별판매액 합계표: 농·어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판매하였을 경우 또는 장애인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판매하였을 경우 또는 장애인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판매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무역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수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  
(2011년 7월1일 이후 공급분 자료부터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재고납부세액은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유형 전환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고납부세액 가산대상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대상인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사업양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에 규정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에 한합니다.

- 작성요령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또한 이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였으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공제세액

✓ 매입세액공제

1.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이동안내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b>전체합계</b>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수취분	사업자번호 수취분			
	주민번호수취분			
	소 계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수취분	사업자번호 수취분			
	주민번호 수취분			
	소 계			

라인추가   라인삭제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삭제
1							✕
2							✕
3							✕

적용 >   취소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작성요령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합니다. 입력한 금액은 신고서 상 금액란에 자동으로 기재되며, 세액란에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반영되어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이 기재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과세분”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분

기타공제매입세액명세 TIP 이용안내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 ▶ 작성대상

구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현금영수증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사업용 신용카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기타 신용카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합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에 작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분 금액

※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고서에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분 금액

리안추가
리안삭제

일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카드회원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삭제
1	<input type="text"/>	✕				
2	<input type="text"/>	✕				
3	<input type="text"/>	✕				

적용 >
취소 >
인쇄 >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확인분을 발급 받아 매입처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 작성요령

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기재합니다. 입력한 금액은 신고서 상 금액란에 자동으로 기재되며, 세액란에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반영되어 자동으로 계산된 세액이 기재됩니다.

※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과세분”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TOP 이용안내

[작성대상](#)

구분	매입처수	건수	매입가액	의제매입세액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①계산서			
	②신용카드			
농·어민등으로부터 매입분				
합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8/108 (업종변경가능)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총 합계 금액  이 보다 ①의 매입가액이 더 작아야 합니다.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총 합계 금액  이 보다 ②의 매입가액이 더 작아야 합니다.

[리인쇄하기](#) [리인식제](#)

일련번호	설명	주민등록번호	건수	수량	품명	매입가액	삭제
1	<input type="text"/>	✕					
2	<input type="text"/>	✕					
3	<input type="text"/>	✕					

[적용 >](#)
[취소 >](#)
[인쇄 >](#)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 세액란에는 [농산물 등의 가액 × 8/108(2009.1.1~ 계속 적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공제대상

-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
  - ① 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원재료로서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은 공제 가능합니다.

- ② 간이과세자가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과세분 공급대가의 5% 한도의 구입액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제출 없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방법: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와 함께 의제매입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③ 농민 등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만 제출합니다.

※ 의제매입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TIP 이용안내 ✕

구분		공급가액	세액
공제세액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 작성대상

구분	매입처수	매수	금액	세액
합계				

▶ 라인추가 ▶ 라인삭제

일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삭제
1						✕
2						✕

적용 >
취소 >
인쇄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때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합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직접 전자신고 할 경우 신고 건당 1만원을 실제 납부 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환급은 불가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110 이용안내**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집계표 공제첨부서식 입력 **공제대상**

구분	신용카드·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합계	앞의 합계중 세금계산서 (계산서)교부금액
과세매출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면세매출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봉사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간이과세 음식점종 **합계금액 :**  **공제세액 :**

**적용 >** **취소 >** **인쇄 >**

사업자(법인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의 13/1,000(간이과세 음식점업자 26/1,000)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을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작성요령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 × 13/1,000(간이과세 음식점업자 26/1,000)}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연간 700만원 한도)

✓ 기타

기타 공제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의 투명화·정상화를 통한 귀금속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무납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매출자에 의한 거래징수제도를 「매입자납부제도」로 전환하여, 매입자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합니다.

- **작성요령**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신한은행)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금액”란에 적고,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의 공제세액을 “세액”란에 기재합니다.

▶ **가산세 계**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태만에 대하여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 **작성요령**

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가산세**

가산세 종류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미등록 및 타인명의 허위등록 가산세	미등록(허위)기간의 공급대가	5/1000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20/100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
부당 무/과소 신고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세액	40/100
무납부/과소납부 가산세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지연납부일수 . 1 일당 3/10000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	5/1000

※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1.12.31.까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1%)

▶ 과세표준 및 면세사업명세

▶ 과세표준/면세사업명세 TIP 이월연내 ✕

	업종코드	업태	종목	수입금액
과세표준명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025,00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수입금액제외			<input type="text"/>
	과세표준 합계금액			3,025,000

	업종코드	업태	종목	수입금액
면세사업명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수입금액제외			<input type="text"/>
	면세사업 합계금액			<input type="text"/>
	<span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작성대상</span> 계산서 발급금액			<input type="text"/>
	<span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작성대상</span> 계산서 수취금액			<input type="text"/>

적용 >
취소 >

✓ 과세표준명세

업종별로 매출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이 있으면 모두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과세표준 금액을 업태/종목별로 기재하되 "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과세표준 합계금액은 부가세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액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동일 업종에 대해서는 금액을 합산하여 1개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명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검업자의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농·축·수·임산물이나 의료·교육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검업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작성요령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도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산서 발급금액: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사업을 경영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작성합니다. 금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계산서 수취금액: 사업자가 신고대상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등을 구입하고 교부 받은 계산서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금액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첨부서류 작성

부가세 신고 시 필요한 기타 첨부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건물관리명세서 - 간이

▶ 건물관리명세서 TIP 이용안내
✕

법정동 주소 입력
도로명 주소 입력

법정동코드	<input type="text"/>						
법정동명	<input type="text"/>						
산번지	<input type="text"/>	번지	<input type="text"/>	번지호	<input type="text"/>		
블록명	<input type="text"/>						
동	<input type="text"/>	동호	<input type="text"/>	통	<input type="text"/>	반	<input type="text"/>
건물명	<input type="text"/>		건물동명	<input type="text"/>			
건물소재지	<input type="text"/>						

총 관리건수  건 / 총 관리비합계  원

▶ 관리추가
▶ 관리삭제

일련 번호	층구분	층	면적	입주일	퇴거일	관리비금액(원)	삭제
	호실명	호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성명)			
1	지하층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2	지하층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3	지하층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적용 >
취소 >
인쇄 >

업종이 부동산 관리업인 경우 작성하는 첨부서류 입니다.

### - 작성요령

건물 소재지는 법정동 주소 및 도로명 주소로 입력 가능합니다. 원하는 주소 형식에 맞춰 법정동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신고

- ① 상가 또는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별로 작성합니다.
- ② 동일 주소지에 건물(ex. 가동, 나동...)이 따로 있는 경우 건물동명까지 기재합니다.
- ③ 관리비 납부자가 변경될 때만 입주일 또는 퇴거일을 입력합니다.

### •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기타공제매입세액명세서 ▶▶ 이용안내
✕

구분	금액	세액	연결첨부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일반매입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고정자산매입	0	고정자산 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신고서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과세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
변제대손세액			
합계	0	0	

고정자산 취득명세서
▶ 작성대상

감가상각자산종류	건수	공급가액	세액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기타감가상각자산			
합계			

※ 하단의 ①금액은 전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합계 15,000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 하단의 ②금액은 전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제출합계 0 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구분	건수	공급가액	세액
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제출분			
합계			

※ 상단표의 합계와 하단표의 합계가 동일해야 합니다.

적용 >
취소 >
인쇄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작성하는 첨부서류 입니다.

**- 작성요령**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을 자산종류별로 구분 입력하고 총합계금액은 세금계산서수취분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제출분으로 구분 입력합니다.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입력한 내용은 반드시 일반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의 [매입세액]입력 화면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기타공제매입세액명세 ▶▶ 이용안내
✕

구분	금액	세액	연결첨부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일반매입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
	고정자산매입	0	고정자산 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신고서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과세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
변제대손세액			
합계	0	0	

**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작성대상

1.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 매입·매출 현황

품목수	매입현황		매출현황		
	매입처수	취득금액 총액	매출처 수	공급가액	매출세액

2.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관련 신고내용  
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 취득가액 계산

당기 고금 매출액			취득가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합계	예정분	확정분	한도률	한도액	합계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80/100				

나. 고금 의제매입세액 계산

공제대상취득가액	공제대상 세액		납부세액	실제 적용 받을 수 있는 세액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	공제(납부)할 세액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3/103					

3. 구비서류: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 ▶ 리언추가 ▶ 리안착제

일련 번호	매입일련번호	품위	수량	매입자상호	매입사업자/주인	취득가액	삭제
	품목명	중량	매출처상호	매출사업자/주인	공급가액		
1		24K ▼					✕

적용 >
취소 >
인쇄 >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첨부서류 입니다.

- **작성요령**

당기 고금 매출액의 예정/확정분은 월별조기환급 신고분을 각각 포함하여 작성 합니다.

한도율은 80/100이고, 공제율은 3/103이며, 공제대상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한도계산의 '한도액'의 금액과 당기 이전 고금 매입액의 '합계'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반드시 고금 매입·매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구분	매수	공급가액	세액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등	0	0	0
②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0	0	0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및 유지	0	0	0
④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0	0	0
⑤ 면세사업 관련	0	0	0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0	0	0
⑦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0	0	0
⑧ 금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0	0	0
합계	0	0	0

명세서의 세부내역인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 내역,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내역,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내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각 구분별로 입력합니다.

※ 동일한 사유는 두 번 입력할 수 없으니 반드시 동일 불공제 사유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역

과세,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총공급가액 등”란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총공급가액 · 총매입가액 ·

총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입합니다. “면세공급가액 등”란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 매입가액 · 예정공급가액 또는 총예정사용면적을 기입합니다.

※ “총공급가액 등”란이 금액이면 “면세공급가액 등”란은 금액이어야 하고, “총공급가액 등”란이 면적이면 “면세공급가액 등”란도 면적 이어야 합니다. 또한 금액과 면적은 동시에 적으면 안됩니다.

-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자 할 때 작성하며, “면세사업확정비율”란은 과세 ·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및 사용면적 비율을 기재합니다.

※ “면세사업확정비율”란은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입력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내역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 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증감되어 재계산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경감률”은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0분의 5(2001.12.31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10을 선택)를 선택하고,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100분의 25를 선택합니다.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액(사용면적)비율”란은 현재의 면세비율과 재계산 이전의 면세비율을 입력하면 자동계산 됩니다.

※ “경감률”은 1미만이어야 하고,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계산시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취득일 이후 재계산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기간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이 내역은 확정 신고기간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

**기타공제매입세액명세** X

구분	금액	세액	연결첨부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일반매입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
	고정자산매입	0	고정자산 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신고서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b>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b>
재고매입세액			과세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
변제대손세액			
합 계	0	0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1. 과세사업 전환 전 면세사업자 인적사항

과세사업사용·소비시기	감가상각자산이 과세사업으로 사용 또는 소비되기 시작한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2. 감가상각자산명세서

일련	구분	수량	취득일	면세사업관련 불공제세액	과세사업전환 공제매입세액	보관장소	삭제
1	건축·구축물						X
2	건축·구축물						X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불공제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첨부서류 입니다.

- 작성요령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입력합니다.

※ 과세사업 사용, 소비시기는 반드시 당해 과세기간 내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 과세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서 - 간이

기타공제매입세액명세 **TOP 이용안내**

구분	금액	세액	연결첨부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일반매입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
	고정자산매입	0	고정자산 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신고서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과세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
변제대손세액			
합계	0	0	

**과세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간이과세 적용시작일		간이과세 적용종료일	
간이과세 전환통지일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 리연추가    리인식제

일련 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부가세포함)	재고매입세액	취득일	삭제
1							✕

적용 >    취소 >    인쇄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되는 날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변경되는 날 현재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작성·제출하는 첨부서류입니다.

• 내국신용장 전자발급명세서 - 간이

▶ 기타 영세율금액 입력 TOP 이용안내
✕

구분	공급가액
영세율	<input type="radio"/> 영세율 기타 매출부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연계 첨부서류 작성**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월별판매액합계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구분	건수	금액(원)
합계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내국신용장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구매확인서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리안추가
리안삭제

일련	구분	서류번호	발급일	공급받는자 사업자번호	금액(원)	삭제
1	내국신용장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2	내국신용장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적용 >
취소 >
인쇄 >

전자무역문서로 발급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첨부서류 입니다.

- 작성요령

구분 선택에서 내국신용장인지 구매확인서인지 선택하여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 서류번호를 반드시 입력하고, 발급일은 구매확인서는 확인일자, 내국신용장은 개설일자를 입력합니다. 또한 금액이 외화만 있는 경우 한 건이면 역으로 환산하여 환율을 계산하고, 여러 건일 경우 발급 당시 환율로 계산합니다.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 대손세액가감 TIP 이용안내
✕

구분	공급가액	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 대손세액가감	0

※ 대손세액공제(변제) 신고서 입력
▶ 작성대상

👤 라인추가 🗑 라인삭제

일련 번호	구분	대손 변제일	대손변제 금액	대손변제 세액	공급자 (공급받는자)			대손변제 사유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1	대손 ▼							
2	변제 ▼							

적용 >
취소 >
인제 >

대손세액공제신고서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후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으로 인해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

- 작성요령

구분 선택에서 대손 혹은 변제를 선택하여 신고내용을 입력합니다.

※ 공급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그 세액을 "매출세액입력" 화면에서 대손 세액분의 "회수한 세액"란에 입력합니다. 또한 공급받은 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변제신고서는 "매입세액입력" 화면의 "기타공제분"에서 입력 할 수 있습니다.

• 매입계산서합계표 - 간이

▶ 과세 표준/면세사업 명세 TIP 이용안내 ✕

	업종코드	업태	종목	수입금액
과세 표준 명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025,00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수입금액제외			
	과세 표준 합계금액			3,025,000

	업종코드	업태	종목	수입금액
면세 사업 명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수입금액제외			
	면세사업 합계금액			
	<span style="color: blue; font-size: small;">▶ 작성대상</span> 계산서 발급금액			
<span style="color: blue; font-size: small;">▶ 작성대상</span> 계산서 수취금액				

적용 >
취소 >

일반 과세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교부 받은 계산서를 각 매입처별로 합계하여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

(계산서 수취금액을 클릭하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 작성요령

매입처별계산서 수취내역을 입력합니다. (계산서 낱장으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는 매입처별로 계산서를 합산하여 입력하지 않고 낱장으로 각각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매입처별로 계산서를 자동 합산합니다. 단, 낱장으로 입력할 시에는 각 매입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 간이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TIP 이용안내 ✕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b>전체합계</b>		<b>1</b>	<b>1</b>	<b>15,000</b>	<b>15,000</b>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수취분	사업자번호 수취분	0	0	0	0
	주민번호수취분	0	0	0	0
	<b>소 계</b>	<b>0</b>	<b>0</b>	<b>0</b>	<b>0</b>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수취분	사업자번호 수취분	<b>1</b>	<b>1</b>	<b>15,000</b>	<b>15,000</b>
	주민번호 수취분	0	0	0	0
	<b>소 계</b>	<b>1</b>	<b>1</b>	<b>15,000</b>	<b>15,000</b>

리인추가 리인삭제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삭제
1	1234512343	나나매입처	1	15,000	1,500		✕
2							✕
3							✕

적용 > 취소 > 인쇄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각 매입처 별로 합계하여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

- 작성요령

매입처별세금계산서수취내역을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낱장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는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입력하지 않고, 낱장으로 각각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를 자동 합산합니다. 단, 낱장으로 입력할 시에는 각 매입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입력시 반드시 과세구분에서 과세분과 영세율 분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간이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100 이용안내
✕

구분		공급가액	세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매입세액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 작성대상

구분	매입처수	매수	금액	세액
합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라인추가 📄 라인삭제

일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삭제
1	<input type="text"/>	✕				
2	<input type="text"/>	✕				

적용 >
취소 >
인쇄 >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작성하는 첨부서류 입니다.

- 작성요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거래처별로 합산하여 입력합니다.

※ 사용자는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를 합산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 건당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하여야 하며, 신청월별로 2건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매출계산서합계표 - 간이

▶ 과세 표준/면세사업 명세 TIP 이용안내 ✕

	업종코드	업태	종목	수입금액
과세 표준 명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025,000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수입금액제외			
	과세 표준 합계금액			3,025,000

	업종코드	업태	종목	수입금액
면세 사업 명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수입금액제외			
	면세사업 합계금액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작성대상</span> 계산서 발급금액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 작성대상</span> 계산서 수취금액				

적용 >
취소 >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발행한 계산서를 각 매출처별로 합계하여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

(계산서 발급금액을 클릭하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 작성요령

매출처별 계산서발행내역을 입력합니다. (계산서 낱장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 사용자는 매출처별로 계산서를 합산하여 입력하지 않고 낱장으로 각각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매출처별로 계산서를 자동 합산합니다. 단, 낱장으로 입력할 시에는 각 매출처별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주민등록번호 발급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명세에 기재하면 안되며 주민번호 발급분 합계란에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계산서를 거래상대방 구분 없이 전부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영세율공급가액
<b>전체합계</b>					공급가액합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발급분	사업자번호 발급분	0	0	0	0
	주민번호발급분	0	0	0	0
	<b>소 계</b>			0	0
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번호 발급분				
	주민번호 발급분	0	0	0	0
	<b>소 계</b>				

관린추가 관린삭제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삭제
1							✕
2							✕

적용 > 취소 > 인쇄 >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각 매출처별로 합산하여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

- 작성요령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발행내역을 입력합니다. (세금계산서 낱장으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입력시 반드시 과세구분에서 과세분과 영세율분 및 매입자 발급분을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도 동일하게 구분하여 입력함)

※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주민등록번호 발행분)에는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합계란에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 구분 없이 전부 합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 면세유류공급명세서 - 간이

면세유류공급명세서 TIP 이용안내
✕

1. 면세유류 환급내역 합계(세액란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만 기재)    단위: l, kg, 천원 작성마감

㉠ 합계		㉡ 휘발유		㉢ 경유		면세유류공급시작일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등유		㉤ 중유		㉥ LPG		종료일	
수량	세액	수량	세액	수량	세액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농민 등 면세유류 환급명세서(농민,임업인별 별지 기재)    단위: l, kg, 천원 라인추가 라인삭제

일련 번호	주민(사업자)	합계수량	합계세액	휘발유 수량	휘발유 세액	경유 수량	경유 세액	삭제
성명(법인명)		등유 수량	등유 세액	중유 수량	중유 세액	LPG 수량	LPG 세액	
1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text"/>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적용 >
취소 >
인쇄 >

유류매출 중 면세공급부분을 작성하는 첨부서류 입니다.

※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 등에게 공급한 면세유류는 석유판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 받거나 징수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기타 매출금액 입력 TIP 이용안내
✕

구분	공급가액	세액	합계
과세분	①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보증금이자 합계 0원은 ①의 합계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입력 ▼ ▶ 작성대상

임차인정보	사업자등록번호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성명(상호) <input style="width: 150px;" type="text"/>																
건물정보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동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층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호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m2(면적)																
임대정보	<small>※ 과세기간 중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입주일(과세기간시작일), 퇴거일(갱신일 전일), 갱신일(계약변경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small>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보증금 <span style="font-size: small;">?</span>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td> <td style="width: 50%;">입주일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td> </tr> <tr> <td>월임대료 <span style="font-size: small;">?</span>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td> <td>퇴거일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td> </tr> <tr> <td>보증금이자 <span style="font-size: small;">?</span>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td> <td>갱신일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td> </tr> <tr> <td>월임대료합계 <span style="font-size: small;">?</span>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td> <td style="text-align: right;"> <span style="background-color: #007bff; color: white; padding: 2px 5px;">입력내용추가</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6c757d; color: white; padding: 2px 5px;">내용 초기화</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6c757d; color: white; padding: 2px 5px;">삭제</span> </td> </tr> </table>	보증금 <span style="font-size: small;">?</span>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입주일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월임대료 <span style="font-size: small;">?</span>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퇴거일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보증금이자 <span style="font-size: small;">?</span>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갱신일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월임대료합계 <span style="font-size: small;">?</span>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span style="background-color: #007bff; color: white; padding: 2px 5px;">입력내용추가</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6c757d; color: white; padding: 2px 5px;">내용 초기화</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6c757d; color: white; padding: 2px 5px;">삭제</span>								
	보증금 <span style="font-size: small;">?</span>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입주일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월임대료 <span style="font-size: small;">?</span>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퇴거일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보증금이자 <span style="font-size: small;">?</span>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갱신일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월임대료합계 <span style="font-size: small;">?</span>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span style="background-color: #007bff; color: white; padding: 2px 5px;">입력내용추가</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6c757d; color: white; padding: 2px 5px;">내용 초기화</span> <span style="background-color: #6c757d; color: white; padding: 2px 5px;">삭제</span>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style="width: 12.5%;">일련번호</th> <th style="width: 12.5%;">사업자(주민)번호</th> <th style="width: 12.5%;">상호(성명)</th> <th style="width: 12.5%;">입주일</th> <th style="width: 12.5%;">갱신일</th> <th style="width: 12.5%;">퇴거일</th> <th style="width: 12.5%;">보증금</th> <th style="width: 12.5%;">월임대료</th> </tr> <tr> <td>동</td> <td>층</td> <td>호</td> <td>면적</td> <td>보증금이자</td> <td>월임대료합계</td> <td>임대료 수입금액계</td> <td>비고</td> </tr> </table>	일련번호	사업자(주민)번호	상호(성명)	입주일	갱신일	퇴거일	보증금	월임대료	동	층	호	면적	보증금이자	월임대료합계	임대료 수입금액계	비고	
일련번호	사업자(주민)번호	상호(성명)	입주일	갱신일	퇴거일	보증금	월임대료										
동	층	호	면적	보증금이자	월임대료합계	임대료 수입금액계	비고										
<b>임대료 수입금액 합계</b> <input style="width: 100px;" type="text"/> 0 원																	

※ 현금매출명세서 입력 ▼ ▶ 작성대상

적용 >
취소 >
인쇄 >

부동산 임대사업에 의한 매출이 있을 경우에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

- 작성요령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을 입력합니다. 부동산소재지가 여러 곳에 있을 경우 부동산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신고서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기간 시작일 이전에 입주한 경우에는 입주일을 실제 입주한 입주일로 입력하거나 또는 입력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층, 면적은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명세서 - 간이

▶ 사업장 현황 명세서 TIP 이용안내
✕

사업장정보			<input checked="" type="radio"/> 자가 <input type="radio"/> 타가                     지하 <input type="text"/> 층                     지상 <input type="text"/> 층					차량정보	
대지	바닥면적	연면적	객실수	탁자수	의자수	주차장	종업원수	승용차	화물차
<input type="text"/> m <sup>2</sup>	<input type="text"/> m <sup>2</sup>	<input type="text"/> m <sup>2</sup>	<input type="text"/> 개	<input type="text"/> 개	<input type="text"/> 개	있음 ▾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대	<input type="text"/> 대
임차료			전기,가스료	수도료	인건비	기타	월기본경비계		
보증금		월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작성요령 : 사업장 현황 명세서는 음식, 숙박, 기타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 임차료 중 보증금 : 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12월)의 임차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적습니다.
- 임차료 중 월세 : 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12월)의 임차료를 적습니다.
- 전기,가스료, 수도료, 인건비, 기타 : 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12월)의 경비를 각각 적습니다.
- 월기본경비계 : 임차료 중 월세란 부터 기타까지의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적용 >
취소 >
인쇄 >

업종이 음식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인 경우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

※ 면적은 소수점 없이 정수로만 입력하도록 하고, 금액은 천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또한 월 기본경비는 매 과세기간의 마지막 종료월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수출실적명세서 - 간이

▶ 기타 영세율금액 입력 TOP 이용안내
✕

구분	공급가액
영세율	<input type="checkbox"/> 영세율 기타 매출부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연계 첨부서류 작성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월별판매액합계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구분	건수	외화금액	원화금액
합계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수출재화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기타영세율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일련	수출신고번호	선(기)적일	코드	환율	외화금액	원화금액	세액	삭제
1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ADP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2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ADP ▾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			

외국으로 재화를 직접 반출(수출)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가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

- 작성요령

수출신고필증이 있는 수출내역을 입력합니다. (수출물품이 반품(클레임)될 경우는 "수출신고필증이 있는 수출내역"에 입력하지 말고 "직수출을 제외한 기타 영세율 적용합계"란에 음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고, 통화코드는 수출대금을 결제 받기로 한 외국통화의 코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금액합계표 - 간이

기타공제매입세액명세 ▶ 이용안내
✕

구분	금액	세액	연결첨부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일반매입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
	고정자산매입	0	고정자산 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재활용품자원등 매입세액			재활용품자원등 매입세액 공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신고서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과세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
변제대손세액			
합계	0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 ▶ 적용대상

구분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기타 신용카드			
합계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명세서에 작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분 금액

※ 의제매입 세액공제 신고서에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제출분 금액

리안추가
리안삭제

일련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카드회원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삭제
1			0	0	0	✕
2						✕
3						✕

적용 >
취소 >
인쇄 >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

- 작성요령

입력한 카드회원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합산하여 입력하고, 입력된 내역은 기타 신용카드 내역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은 경우,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수, 금액, 세액을 합산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간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TIP 미용안내
✕

구분	공급가액	세액	합계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공제첨부서식 입력 공제대상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의 합계금액  원과 ①의 합계금액이 동일해야 합니다.

구분	신용카드·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합계	앞의 합계 중 세금계산서 (계산서) 교부금액
과세매출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면세매출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봉사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합계금액 : 
공제세액 :

적용 >
취소 >
인쇄 >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

- 작성요령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을 과세분, 면세분, 봉사료로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내역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금액란에 입력합니다.

• 영세올첨부서류제출명세서 - 간이

▶ 기타 영세올금액 입력 TIP 이용안내
✕

구분	공급가액
영세올	◎ 영세올 기타 매출부

연계 첨부서류 작성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올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유통판매액합계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개별소비세신고서 증빙서류 제출
데이터프 또는 디스켓으로 복사하여 제출

제출사유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	--

리인추가
리인삭제

일련 번호	서류명	발급일자	수출통화코드	당기제출금액 (외화)	당기신고해당분 (외화)	삭제
	발급자	선적일자	환율	당기제출금액 (원화)	당기신고해당분 (원화)	
1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ADP ▼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2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ADP ▼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input style="width: 95%;" type="text"/>	

적용 >
취소 >
인쇄 >

개별소비세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우편수출의 경우에 한함) 등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이미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당해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

- 작성요령

수출통화코드는 수출대금을 결제 받기로 한 외국통화의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당기제출금액 외화는 원화로 대금을 결제 받기로 한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당기신고해당분 외화는 원화로 대금을 결제 받기로 한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산지확인서발급세액공제신고서

▶ 기타 경감 · 공제 세액 TIP 이용안내
✕

구분	금액	세율	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0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			0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0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0
기타			0
합계			10,000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작성

가. 공제대상 세액 공제대상

◎ 원산지확인서 교부건수	◎ 건당 공제금액	◎공제 공제가능세액 (◎x◎)	◎ 해당 공제세액 (◎과◎중 적은 금액)
[ ] 건	1만원	[ ] 원	[ ] 원

나. 공제 한도액 계산

◎ 연간 공제한도액	◎기 공제세액	◎ 해당 과세기간 공제한도액 (◎과◎)
30만원	[ ] 원	[ ] 원

리인추가    리인삭제

원산지확인서		공급받는지		공급물품			세금계산서		비고	삭제
일련 번호	작성일	상호(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일	품명	수량	작성일	공급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용 >    취소 >    인쇄 >

중소기업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공제세액(발급 건당 1만원씩, 연간 30만원 한도)을 작성하는 첨부서류 입니다.

• 월별판매액합계표(농축산임어업) - 간이

▶ 기타 영세울금액 입력 TIP 미용안내
✕

구분	공급가액
영세율 <span style="font-size: small;">◎ 영세율 기타 매출부</span>	<input type="text"/>

연계 첨부서류 작성

수출실적명세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명세서
월별판매액합계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구분	건수	금액(원)
합계	0	<input type="text"/>

라인추가
라인삭제

판매년월	품목명	판매수량	판매가액	비고	삭제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0	3,000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0	6,500	<input type="text"/>	✕

적용 >
취소 >
인쇄 >

농어민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판매하였을 경우 또는 장애인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판매하였을 경우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

- 작성요령

월별 판매액,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집계되어 합산금액이 나타납니다.

※ 거래내역 입력 시 반드시 월 별로 합산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월에 판매한 품명이 여러 종류인 경우 품명과 수량항목에 해당 품명 및 수량을 쉼표(.)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간이

기타공제매입세액명세 ▶▶ 이용안내
✕

구분	금액	세액	연결첨부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일반매입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
	고정자산매입	0	고정자산 취득명세서
의제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
고금 의제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신고서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과세전환 시 재고품등 신고
변제대손세액			
합 계	0	0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작성대상

구분	매입처수	건수	매입가액	의제매입세액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①계산서			
	②신용카드			
농·어민등으로부터 매입분				
합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2/102 (업종변경가능)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총 합계 금액  0 보다 ①의 매입가액이 더 작아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총 합계 금액  0 보다 ②의 매입가액이 더 작아야 합니다.

리안추가 리안삭제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수	수량	품명	매입가액	삭제
1	<input type="text"/>	✕					
2	<input type="text"/>	✕					
3	<input type="text"/>	✕					

적용 >
취소 >
인쇄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고자 작성하는 첨부서류입니다.

**- 작성요령**

농어민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농·수·축·임산물이 있는 경우 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사업자로부터 농·수·축·임산물을 공급받고 매입 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화면 하단 합계의 "계산서"나 "신용카드 등"란에 합산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음식점업자가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농·어·민 등으로부터 매입분의 매입가액 합계는 반드시 음식점업에 대한 과세 매출금액의 5%를 한도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수량을 모르는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8/108, 법인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6/106을 적용 받고, 그 외 기타업종은 모두 2/102을 적용 받습니다.

• 재할용폐지 및 중고자동차매입

기타공제매입세액명세서 ※ 미공인내
✕

구분	금액	세액	연결정부서식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영수증	일반매입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영수증
	고정자산매입	0	고정자산 취득영수증
외계매입세액			외계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재할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재할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
고급 외계매입세액			고급 외계매입신고서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과세사업전환 참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과세전환 시 재고등 신고
변제대손세액			
합계	0	0	

재할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적용대상

1. 재할용폐자원등 매입합계

구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공제액
합계				
업수증 수취분				
계산서 수취분				

2. 재할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율과 금액 등

매출액			대상액 환도계산		당기 매입액			공제가능 금액
합계	예정분	특정분	환도율	환도액	합계	세금계산서	업수증 등	
			0.8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 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공제(남부)할 세액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합계	예정신고분	출발조기분	
	6/106					

3. 업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연월 기재)

▶ 리연주거
▶ 리연식재

입원 번호	설립/상호(기관명)	매수	차량번호	차대번호	취득금액	삭제
	주민/사업자번호	수할	품목명			
1						✕
2						✕

적용 >
취소 >
인생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신고서입니다.

**-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 폐자원 범위**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 이에 속합니다.

**- 작성요령**

월별 조기환급 신고자는 확정신고 시 기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중복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확정신고 시에만 작성 가능하며, 중고자동차의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매출액의 예정, 확정분은 월별조기환급 신고분을 각각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한도율은 80/100입니다.

당기매입액은 1과세기간(6개월)을 의미하고, 공제대상 금액은 당기매입액의 “영수증등”의 금액과 “공제가능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기타 경감 · 공제 세액 TIP 이용안내
✕

구분	금액	세율	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0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			0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0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0
기타			0
합계			10,000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작성

가. 공제대상 세액 공제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수	Ⓜ 건당 공제금액	Ⓜ 공제 공제가능세액 (ⓂxⓂ)	Ⓜ 해당 공제세액 (Ⓜ과Ⓜ중 적은 금액)
0건	200원	원	원

나. 공제 한도액 계산

Ⓜ 연간 공제한도액	Ⓜ 기 공제세액	Ⓜ 해당 과세기간 공제한도액 (Ⓜ과Ⓜ)
100만원	원	원

적용 >
취소 >
인쇄 >

- 작성요령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성한 경우 공제세액(발급 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한도)을 기재합니다.

(2011년 1월1일 이후 발행 분부터 발급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 전자화폐 결제명세서 - 간이

▶ 전자화폐 결제명세서 VIP 이용안내
✕

작성대상

가맹점번호

전자결제금액 합계

라인추가
라인삭제

일련 번호	전자화폐발행회사	구매자	결제일자	전자결제금액	결제처리번호	기타 (구매자 e-mail)	삭제
1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					
2	<input style="width: 90%;" type="text"/>	✕					

적용 >
취소 >
인쇄 >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첨부서류 입니다.

• 현금매출명세서

▶ 기타 매출금액 입력 TIP 이용안내
✕

구분	공급가액	세액	합계
과세분 ①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보증금이자 합계  원은 ①의 합계금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입력 ▼ ▶ 작성대상

※ 현금매출명세서 입력 ▼ ▶ 작성대상

건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심판변론인  
  법무사  
  경영,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측량사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공인노무사  
  의료사업  
  수의사업  
  그외

구분	합계	현금매출	법정영수증매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급가액	건수	null	null	null	null
	금액	null	null	null	null

라인추가  
 라인삭제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삭제
1	<input type="text"/>	✕					
2	<input type="text"/>	✕					
3	<input type="text"/>	✕					

적용 >
취소 >
인쇄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가 수입이 발생한 경우 작성하는 첨부서류 입니다.

- 작성요령

세금계산서의 건수, 금액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집계표의 사업자등록증번호 발행분의 매수, 공급가액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발행분 중 신용카드매출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매출은 현금영수증란에 입력합니다.

• 납부서

납부서 (수납기관용)

(2면)

(전자) 납부번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번호	서코드	납부년월	결정구분	세목	국세청	011789	
0126	0	201207	3	41			
성명 고객센터(관리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999-11-05007	회계년도	2012
주소				(999-11-05007)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속관	조세
귀속연도/기분		2012년귀속 1기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12년 07월 25일		
세목명		납부금액					
부가가치세		304,226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812					
계		305,038			년    월    일 은행            지점 우체국		

\* 이 납부서는 FAX로 전송하거나 복사하시면 자동화기기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이 납부서로서는 우리, 신한, 국민, 경남, 기업, 광주은행 또는 수협, 농협, 자동화기에서 납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 할 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됩니다. 본 납부서는 부가세신고 입력 사항에 따른 세액이 있는 경우 작성되며, 직접 입력 및 수정은 불가합니다.

## ■ 신고자료 저장 및 생성

작성한 부가세신고 자료를 국세청에서 부가세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자료를 생성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자료명은 "enc\_~.101" 형태로 저장됩니다.

- ① 작성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 신고자료 저장 및 생성

납세자	고객센터	신고구분	2012년 1기 확정 신고
신고서 항목명		금액	세액
(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합계		3,025,000	319,600
(나) 매입세액 차감계		15,000	1,500
(다) 납부(환급) 세액			318,100
(라) 경감공제세액합계		29,800	13,874
(마)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바) 예정고지 세액			
(사) 금지금 매입자 납부 특례기납부세액			
(아) 가산세액계			
(25)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304,226
첨부서류명		금액	세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9,000	19,0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5,000	15,00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29,800	38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0	10,000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2,000	0

※ 신고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뒤 오른쪽의 부가세 전자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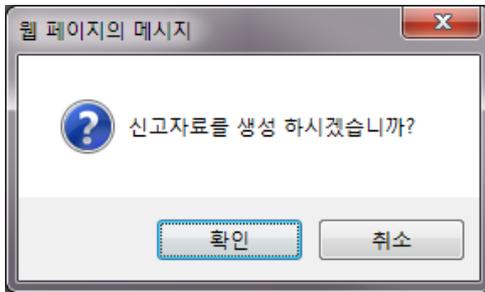
부가세 전자신고 >

- ② 신고내용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하단 우측에 있는 [부가세 전자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③ 부가세 신고서 국세청 자료로 변환과 동시에 저장합니다. 국세청 세무자료로 전자신고 시 필요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는 신고자료를 전자신고 시 꼭 필요하므로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④ 입력한 신고내용이 맞다면 신고자료를 생성하여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 ■ 부가세 신고서 저장 이력

앞서 저장한 신고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저장된 모든 신고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상태여부 확인 및 부가세 신고서 수정 및 마감처리, 삭제도 가능합니다.

신고분기	신고기간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환급액	작성/ 신고일	상태	상세	마감 처리
2012년 2기 예정 3개월	12/07/01~12/09/30	20,690,910	12,500,000	8,028,910	12-10-23	임시	<a href="#">보기</a>	<a href="#">마감처리</a>
2012년 1기 확정 3개월	12/04/01~12/06/30	319,600	1,500	304,226	12-10-23	완료	<a href="#">보기</a>	-

각 신고분기에는 하나의 부가세 신고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세신고

부가세신고서를 작성하여 단순 저장 하였을 때는 상태가 "임시"로 저장되고, 신고자료를 저장뿐만 아닌 국세청 신고자료로 변환(생성) 하였다면 상태는 "완료"로 저장됩니다. 단순 저장한 임시상태의 부가세 신고서는 마감처리를 해야 하고, 자료저장 및 국세청 신고자료로 생성했다면 마감처리는 자동으로 됩니다.

저장된 신고서는 상세 "보기" 버튼을 통해 해당 부가세 신고서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하며, 이미 국세청자료를 생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 및 수정할 자료가 있다면 부가세 신고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수정 추 저장 이력 화면에서 확인하면 "임시"상태로써 마감처리 되지 않은 저장된 신고서로 보여집니다.

부가세 신고이력화면 보기			
납세자	고객센터	신고구분	일반
신고서 항목명		금액	세액
(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합계		206,909,090	20,690,910
(나) 매입세액 차감계		125,000,000	12,500,000
(다) 납부(환급) 세액		-	8,190,910
(라) 경감공제세액합계		12,000,000	162,000
(마)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	0
(바) 예정고지 세액		-	0
(사) 금지금 매입자 납부 특례기납부세액		-	0
(마) 가산세액계		-	0
(자)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8,028,910
첨부서류명		금액	세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96,000,000	19,600,0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25,000,000	12,500,00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12,000,000	156,00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0	6,000

부가세 신고서 수정 >
부가세 신고서 삭제 >